4 부채 / 채무 / 채권

4-1. 통합부채 현황

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. 우리 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	2014년	2015년	증감
통합자산		635,893	814,679	178,786
통합부채		15,231	16,067	836
	유동부채	5,803	8,447	2,644
	장기차입부채	0	0	0
	기타비유동부채	9,429	7,620	-1,809

- '15년 결산 순계기준
- 우리 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
-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「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」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·합산된 것임
- 통합자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- 통합부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
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
4-2. 지자체 부채 현황

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(퇴직금, 미지급금, 보관금 등)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, '4-6. 지자체 채무 현황'의 지방채무와 '4-3. 지방공기업 부채' 중 직영기업(공기업 특별회계)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2014년	2015년	증 감	비고
자산(A)	634,739	813,530	178,791	
부채(B)	15,225	16,065	840	
자산대비부채비율 (B/A*100)	2.4	1.97	-0.43	

-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
- 부 채 : 유동부채, 장기차입부채, 기타비유동부채
  - 유동부채 : 단기차입금, 유동성장기차입부채, 기타유동부채 등
  - 장기차입부채 : 장기차입금, 지방채증권
  - 기타비유동부채 : 퇴직급여충당부채,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
- 자 산 : 유동자산, 투자자산, 일반유형자산, 주민편의시설, 사회기반시설, 기타비유동자산

4-3.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

우리 구에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.

4-4. 출자·출연기관 부채 현황

우리 구의 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.(출자기관 없음)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	2014년			2015년		
	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	자산(A)	부채(B)	자본대비 부채비율 (B/(A-B)×100
합 계		1,138	0	0	1,149	1	0.12
출연기관	소 계	1,138	0	0	1,149	1	0.12
	(재)서구장학회	1,138	0	0	1,149	1	0.12

4-5. 우발부채 현황

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구는 우발부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4-6. 지자체 채무 현황

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(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).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.

❖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명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채무현황	60	0	0	0	0
인구수	222,619	220,211	215,399	210,770	206,028
주민 1인당채무(천원)	0	0	0	0	0

▸ '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

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

(단위 : 천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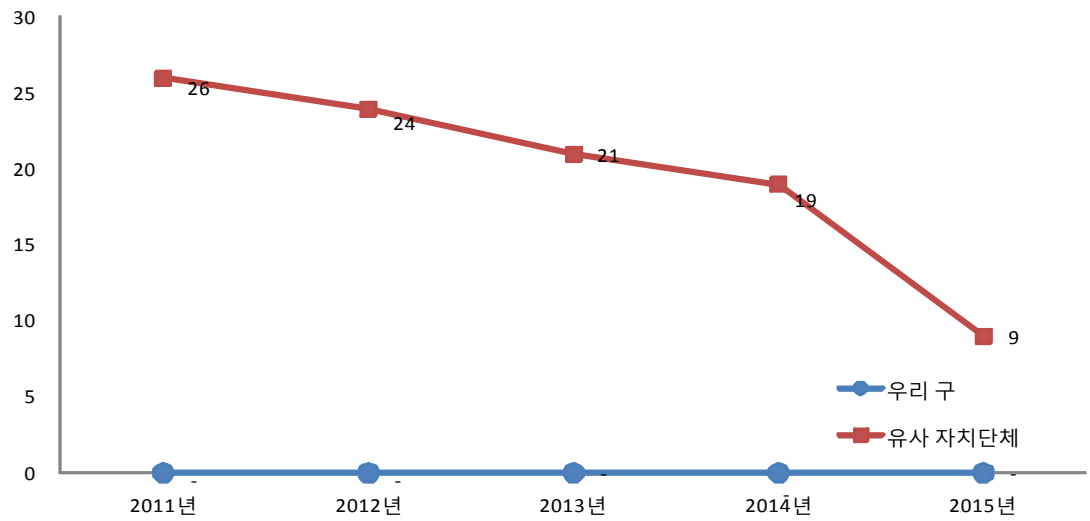

4-7.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지방채발행한도액(A)	5,100	4,300	1,500	1,600	1,700
발행액(B)	-	-	-	-	-
발행비율(B/A*100)	-	-	-	-	-

▸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,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

▸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

* 별도한도액 =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+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+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

**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=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% 이내이고,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'공공 및 기타대출'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

4-8. 일시차입금 현황

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. 우리 구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.

4-9.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

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(BTL, BTO 등)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. 우리 구가 민자사업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.

4-10.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· 이행현황

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'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, '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, '16~'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▸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('16.11.예정)

4-11. 보증채무 현황

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구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.

4-12. 채권 현황

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(융자)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.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'14년도 현재액 (A)	증 감 액			'15년도 현재액 (A+B)
			계 (B=C-D)	발생액(C)	소멸액(D)	
합 계		4,280	6	20	14	4,286
일 반 회 계		4,191	6	20	14	4,198
특별회계	소 계	4	-1	-	1	4
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	-1	-	1	4
	재정비촉진특별회계	-	-	-	-	-
기금회계	소 계	85	-	-	-	85
	청소년육성기금	-	-	-	-	-
	식품진흥기금	-	-	-	-	-
	재난관리기금	-	-	-	-	-
	자활기금	85	-	-	-	85
	노인복지기금	-	-	-	-	-
	주차시설확충기금	-	-	-	-	-

▸ '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

채권 연도별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연 도 별				
	2011	2012	2013	2014	2015
채권현황	3,919	4,143	4,200	4,280	4,286

▸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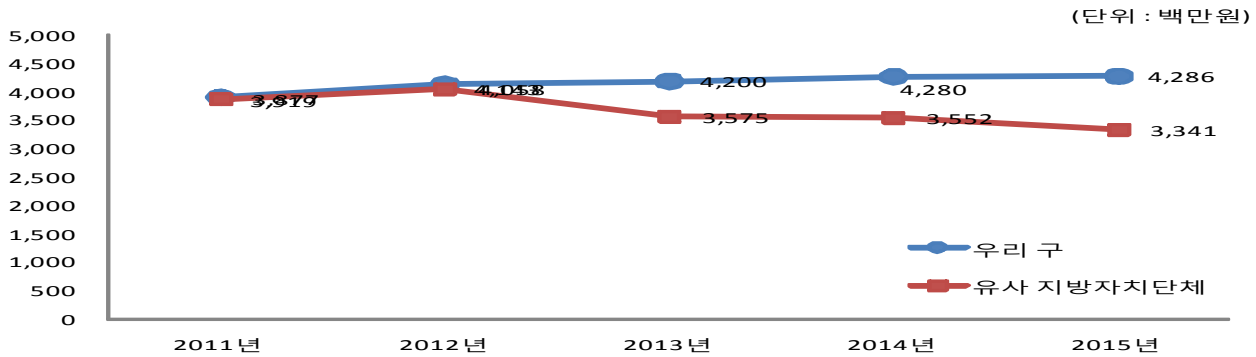
채권현황 연도별,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